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군무원 보직 근거 마련〉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4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범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24.
3. 회부연월일 : 2025. 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는 보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군무원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정작 군무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제3호).

개정안은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 보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에 군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항 제3호).

- 2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실장·국장·과장 등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은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됨)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정직공무원은 해당 기능 관련 행정기관에만 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안전·재난업무 담당) 및 소방청에는 특정직공무원인 외무공무원, 현역군인, 검사, 소방공무원을 각 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보할 수 있음.

그런데, 현역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의 구성원이 되는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²⁾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 근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현역군인과의 형평성³⁾ 및 군무원의

1)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교부: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 2)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군에 두는 민간인력으로서,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됨. 군 내에서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말 기준 군무원 현원은 43,292명으로 군부대 및 군 관련 기관 등에 배치됨.

[일반군무원 직군 및 직렬]

직군	직렬
행정	행정, 사서, 군수, 군사정보, 기술정보, 수사
시설	토목, 건축, 시설, 환경
정보통신	전기, 전자, 통신, 전산, 지도, 영상, 사이버

사기 진작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이들이 현장에서 습득한 다양한 군사 지식과 전문기술을 국방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군무원의 인력운용·정원책정·인사관리 등에 당사자인 군무원이 배제됨으로써 군무원 인력관리제도의 개선 등에 한계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⁴⁾

또한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자연감소와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되면서 수년간 채용인원이 확대⁵⁾되어 온 군무원 증원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⁶⁾ 군 부대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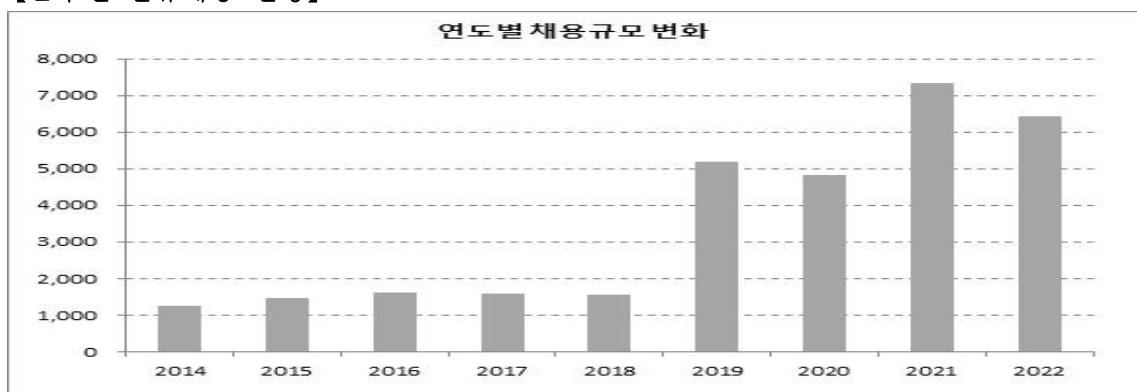
직군	직렬
공업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함정	선체, 선거, 항해, 함정기관, 잠수
항공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 기상예보
보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의공, 영양관리
예비전력관리	예비전력관리
관리운영	전산운영, 발간운영, 사무운영, 병참운영, 탄약운영, 조경운영, 사육운영, 이미용운영, 조리운영, 보건운영, 시설운영, 통신운영, 목공운영, 교환운영, 운전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

자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

3) 헌법재판소는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현역 군인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군무원은 제외한 것과 관련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함(헌법재판소 2005헌마1275).

4) “군무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군 인사행정 개선에 관한 연구”, 오종택,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 등 참고

5) 【군무원 신규채용 현황】



국방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배치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불명확한 역할 및 업무 영역 등 문제점⁷⁾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군무원도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군무원 인력의 질적 활용을 통한 국방 행정의 연속성 및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 분야 특정직공무원의 칸막이식 인력 운용을 완화하는 한편, 국방부의 문민화 체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군 관련 조직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군 인적 구성과 군무원의 보임이 적절한 직위 및 업무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음.⁸⁾

6) “군무원 확대 추세 분석과 인력운영 전망”, 국방논단 제1956호(23-31), 이은정, 한국국방연구원, 2023.8. 참고

7) “군무원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지향점”, 국방논단 제1850호(21-18), 김규현·홍숙지, 한국국방연구원, 2021.

8) 헌법재판소는 현역 군인보다는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위가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보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보직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군무원 업무와의 비교 등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함.

[헌법재판소 2005헌마1275]

군인과 군무원은 모두 국군을 구성하며 국토수호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특정직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군인에게만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등에 보해질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 것은 국방부 등이 담당하고 있는 지상·해상·상륙 및 항공작전임무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업무에는 평소 그 업무에 종사해 온 현역군인들의 작전 및 교육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군무원들이 주로 담당해 온 정비·보급·수송 등의 군수지원분야의 업무, 행정 업무 그리고 일부 전투지원분야의 업무는 국방부 등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군 조직 내 군무원의 임무와 역할, 군무원 인력의 획득 및 운용, 보직·승진 등 인사제도,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과 아울러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⁹⁾도 있는바,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군무원의 보직 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군무원의 인력운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정원에 군무원이 없고,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 당시 방위사업청에 군무원을 두지 않고 특별채용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한 점,¹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례(2005헌마1275, 2008.6.26.선고) 등을 감안할 때, 중앙행정기관에 군무원이 근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군무원의 인력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9)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정책 발전 방향 연구”, KIDA Brief,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 2021, “군무원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지향점”, 국방논단 제1850호(21-18), 김규현, 홍숙지 한국국방연구원, 2021. 등 참고

10)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1.2. 제정·시행) 부칙 제14조(특별채용 등의 특례) ① 이 법 시행당시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을 2006년 6월 30일까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급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는 군무원이 수행하는 군수지원, 전투지원 등은 업무 특성상 현역군인과 같은 전문성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 군인·군무원·공무원의 직급체계가 상이하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군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시 인사운영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병무청은 군무원의 업무분야는 주로 군수지원 및 전투지원인바, 병역자원을 획득·관리·유지하는 병무행정에서 이들의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할 분야는 많지 않고 오히려 일반직공무원에 의한 수행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방위사업청은 군무원 정책 등에서 군무원이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에 군무원을 보임하도록 규정하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39